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누버거버먼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 89 조, 제 90 조 및 제 91 조에 따른다.

제 2 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3 조 (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 5 조 및 제 6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행사방향)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펀드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탁자 책임 수행을 통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영업과 투자활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
3. 주요 의사 결정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4. ESG 요인(지배구조, 환경, 사회적 책임 등)

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르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중립적 투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펀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함)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령 제 141 조 제 2 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 당해 펀드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펀드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및 정관변경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할 경우 펀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한도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 81 조제 1 항 및 제 84 조제 4 항에 따른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7 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 3 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펀드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담당자가 결정한다.

② 주식운용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 한다.

제 14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담당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 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 16 조 (공시 및 보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령 제 91 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에 따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17 조 (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 90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2020. 7. 15.)

제 1 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0 년 7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